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
전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불 임 참 조
4. 검 토 의 견 : 불 임 참 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1월 23일

교육사회위원회
전문위원 안문환

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이 조례안은 2008년 1월 11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여성회관의 명칭변경에 따라 기관명칭과 이용대상을 확대하고, 사회적 소외층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 및 교육생 편의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전광역시여성회관, 대전광역시여성문화회관의 명칭 및 기관장의 명칭을 변경함(안 제1조 내지 제2조 제1항).
- 나. 사용 및 수강허가 신청 시 허가순위와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한 우선 허가순위를 정함(안 제2조 제2항).
- 다. 사회적 소외층에 대한 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함(안 제4조).
- 라. 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함(안 제6조 내지 제7조).

3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회관의 명칭이 평생교육문화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인 기관명칭과 이용대상, 시행규칙의 주요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,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육료·수강료 감면 확대 및 보육실 이용대상을 교육생자녀로 한정하는 등 교육생의 편의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,

주요 내용은

- 대전광역시여성회관의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“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”를 “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”로 하고,
- 총12조와 부칙으로 개정하고 안 제1조는 목적을,
- 제2조는 사용 및 수강허가 순위를 규정하였으며,
- 제3조 별표1은 수강료에 정보화교육을 신설하고 보육대상 아동을 교육생 자녀로 한정하였으며,
- 제4조는 사용료, 수강료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며,
- 제6조는 센터의 사용시간을 정하고 시설별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,
- 제7조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,
- 부칙으로 「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및 「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의 기관 및 기관장의 명칭과 위치 등을 정비하였음.

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- 기관명칭의 변경에 따라 여성만 이용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시민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교육전문 기관으로의 위상을 정립하고, 사회적 소외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등에 대한 수강료 면제를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